여신거래추가약정서 (금액변경/기한연장/금리변경/조건변경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거래조건 ( )호 선택 가. ~ 다. <기재 생략> <내용 신설>	**제1조 거래조건 ( )호 선택**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한도약정수수료 변경전 / 변경후 한도약정수수료율 ( )% / 한도약정수수료율 ( )% ▶ 한도약정수수료 산정방식 여신한도 약정금액 × ( )% × 약정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대출은 360일)	- 여신거래추가약정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용) 내용 삽입
라.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변경전 / 변경후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율 ( )%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율 ( )%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산정방식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 x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일, 외화대출은 360)	마.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변경전 / 변경후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율 ( )%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율 ( )%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산정방식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 x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대출은 360일)	- 번호 체하 - 표기 정정
마. ~ 바. <기재 생략>	바. ~ 사. <현행과 동일>	- 번호 체하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변경>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는 매 변동주기에 따라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변동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①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금 실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일의 직전 영업일에 고시된 91일물 CD유통수익률, 6개월물 또는 1년물 금융채(AAA) 유통수익률, 단기COFIX금리 중 하나를 적용하며, 외화대출의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물 LIBOR를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는 매 변동주기에 따라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변동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금 실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일의 직전 영업일에 고시된 91일물 CD유통수익률, 금융채(AAA) 유통수익률(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3년물, 5년물), 단기COFIX금리 중 하나를 적용하며, 외화대출의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물 LIBOR를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 번호체계 변경 - 3개월 금융채 추가 및 내규 반영

②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수익률(변동주기 3개월)로 하며, 금융채(AAA)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직전 영업일에 고시하는 KIS채권평가,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기간별 수익률을 단순평균하여 적용(변동주기 6개월, 12개월)하고, 단기COFIX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직전 영업일에 고시하는 금리(변동주기 3개월)로 적용합니다.	2.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수익률(변동주기 3개월)로 하며, 금융채(AAA)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직전 영업일에 고시하는 KIS채권평가,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기간별 수익률을 단순평균하여 적용(변동주기 3개월, 6개월, 12개월, 36개월, 60개월)하고, 단기COFIX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직전 영업일에 고시하는 금리(변동주기 3개월)로 적용합니다.	- 변동주기 추가
③ <기재 생략>	3. <현행과 동일>	
<내용 신설>	②제1조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은행 내부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은행이 각 기간별 대표금리로 정한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자금별 특성을 반영한 스프레드 등을 가감하여 정한 내부이전가격(FTP)을 기준금리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제1조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수신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이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FTP 기준금리 내용설명 추가 - 금리연동형 수신상품 담보대출 기준금리 내용설명 추가
<내용 신설>	**제3조 한도약정수수료** ①한도거래 여신을 약정할 때 제 1조 라호에서 정한 한도약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 1 조 마호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제 1 조 가호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도증액 금액에 대하여 한도증액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남은 일수에 대하여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본인의 요청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에서 정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신거래추가약정서(한도약정수수료 약정용) 내용 삽입
제3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제1조의 라호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의 계산과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기재 생략>	**제4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제1조의 마호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의 계산과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현행과 동일>	- 번호 체하

②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은 결산일 익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 또는 예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한도초과로 원가되지 않은 수수료는 추가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그 외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가 기일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여신 및 동 여신의 한도 내 개별여신에 대해 신규 및 연장 등의 취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은 결산일 익일, 약정해지일 및 기한연장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 또는 예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한도초과로 원가되지 않은 수수료는 추가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그 외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일, 한도 기한연장일 및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가 기일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여신 및 동 여신의 한도 내 개별여신에 대해 신규 및 연장 등의 취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징구시점 추가

※ 시행일자: 2017.06.12일

※ 기거래 고객에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